

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15일) 상정 수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 송재용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, 부천장학재단 이사로 부천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한편,
-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주어 자립에 도움을 주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부천시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”를 “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”로 개정함(안 제5조제

3항).

나. 재단의 사업에 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”을 신설함(안 제6조제4호 신설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장학재단 해산시 재산의 귀속권은 어디에 있는가?</p> <p>○ 시가 출연한 재산임. 재단해산시 재산이 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.</p> <p>○ 장학재단 이사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?</p>	<p>○ 정관은 도교육청에 귀속, 조례는 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.</p> <p>○ 잘 알겠음.</p> <p>○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음. (이상 교육청소년과장)</p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장학재단 이사로 의회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임. 이사 1명을 의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 또한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나. 찬성토론

- 의회를 대표하는 분을 장학재단 이사로 참여시켜 의회의 목소리를

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.

5. 심사결과 : 『수정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81
의결 연월일	2010. 12. 15

제안년월일 : 2010년 12월 15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학재단 이사로 의회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이사 1명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 또한 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과 부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”를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”를 수정함.(안 제5조제3항)

부천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과 부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”를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”로 한다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구성) 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③ <u>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과 부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④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제5조(구성) ① “개정안과 같음”</p> <p>② “개정안과 같음”</p> <p>③ <u>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④ “개정안과 같음”</p>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과 부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”를 “이사회에는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”로 수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